

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
----------	--

제출년월일 : 2012. . .
제 출 자 : 구 미 시 장

1. 개정이유

구미시 통리반 설치 조례 개정의 증감된 통리 수에 따라 통리장의 정수를 일치시키고자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함.

2. 주요내용

○ 5개통 증설에 따른 통리장의 정수 조정(별표)

- 605개 통리장(통장 434, 리장 171)

⇒ 610개 통리장(통장 439, 리장 171)

- 선주원남동 2명, 형곡2동 1명, 광평동 1명, 양포동 1명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「지방자치법」 제4조의2 제5항 및 동법시행령 제81조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

(1) 입법예고(2012. 4. 12. ~ 5. 2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구미시 조례 제 호

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구미시 통리장 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별표의 선주원남동 46통란 다음에 47통란 및 48통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7	1	47통 구역일원
48	1	48통 구역일원

별표의 형곡2동 22통란 다음에 23통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23	1	23통 구역일원
----	---	----------

별표의 광평동 6통란 다음에 7통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7	1	7통 구역일원
---	---	---------

별표의 양포동 46통란 다음에 47통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47	1	47통 구역일원
----	---	----------

부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련법령

□ 「지방자치법」

제4조의2(자치구가 아닌구와 읍·면·동 등의 명칭과 구역) ① 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·면·동의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이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행정안전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명칭과 구역의 변경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고, 그 결과를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리의 구역은 자연촌락을 기준으로 하되, 그 명칭과 구역은 종전과 같이 하고, 명칭과 구역을 변경하거나 리를 폐지하거나 설치하거나 나누거나 합칠 때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③ 인구 감소 등 행정여건 변화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2개 이상의 면을 하나의 면으로 운영하는 등 행정운영상 면(이하 “행정면”이라 한다)을 따로 둘 수 있다.

④ 동·리에서는 행정 능률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나의 동·리를 2개 이상의 동·리로 운영하거나 2개 이상의 동·리를 하나의 동·리로 운영하는 등 행정 운영상 동·리(이하 “행정동·리”라 한다)를 둘 수 있다.

⑤ 행정동·리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.

□ 「지방자치법시행령」

제81조(이장의 임명) ① 법 제4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읍·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.